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심재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서언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말하기와 글쓰기를 위하여 네 가지 어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중에 ‘외래어표기법’ 하나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의 표기를 문제 삼는 법이다.

우리는 이제 이 ‘외래어표기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새삼스러운 말이거니와,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한국말만 말하고 글을 쓰고 살지만 단 한 순간도 나라밖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구촌 한 마을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피부에 와 닿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어느 구석진 지방의 부족간 싸움이 뉴욕의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환율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촌 구석구석 어느 나라, 어

는 민족의 언어가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또 우리들의 대화에서 중심 화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적어야 할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외래어표기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외래어표기법은 곧 외국어 표기법이 아닌가? 차라리 외국어 표기법이라고 하지 왜 외래어표기법이라고 하는가?”

그렇다. 이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의문이요, 또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의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래어표기법은 곧 외국어 표기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표기법이라 하지 않고 외래어표기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외래어와 외국어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장벽은 우리나라 말, 곧 한국어이다.

외래어는 한국어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이요, 외국어는 한국어와 같이 독립적인 한 나라, 한 민족의 언어이다. 잠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래어’와 ‘외래어표기법’을 어떻게 풀이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외래어(外來語) (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 들온말. 전래어(傳來語). 차용어(借用語)

예, 어느 시대이든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 외래어는 생기게 마련이다.

㉔「참고어휘」 고유어(固有語)

외래어표기법(外來語 表記法) 「언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현행 표기법은 1986년 1월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라는 풀이를 좀 더 풀어보기로 하자. 국어처럼 쓰인다는 것은 국어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여 우리들의 일상 언어생활 안에서 우리말과 섞여 쓰이게 되는 낱말이라는 것이다. 외국어를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어로 말하고 듣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 안에서 쓰이게 되는 형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국어 생활 안에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외국어 낱말의 빌려 쓰기이다.

그러므로 외래어로 쓰이는 낱말은 이미 그 국적을 한국어에 두게 된 것이요, 한국어 자산의 일부가 된 것이다. 물론 외래어로 취급되는 단어들 가운데에는 한국어 자산으로 삼기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낱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 국어 생활 안에서 당당히 독립적인 낱말로 쓰인다면 개인 감정의 좋고 나쁨과는 관계없이 그 낱말은 한국어의 하나인 것이요, 한국어 어휘 증대에 공헌하는 귀중한 언어 자산이다.

몇 해 전 동남아시아 지역에 무서운 지진과 태풍이 해일(海溢)을 일으키며 바닷가 육지로 몰려와 큰 피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 그때에 외신 보도는 일제히 ‘쓰나미[津波]’가 덮쳤다고 보도하였고 우리나라 언론 매체도 예외 없이 ‘쓰나미’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이때에 ‘해일(海溢)’이란 우리말이 있는데 왜 일본말을 쓰느냐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쓰나미’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정착하였고 ‘해일’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 불만은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외래어는 모든 외국어로부터 열린 마음으로 국어 속에 받아들여 국어의 어휘 자산을 증식시키는 새로운 낱말 샘이다. 그리고 이들 외래어를 크게 구분하면 고유명사와 일반 용어로 나눌 수 있다. 고유명사는 다시 크게 인명(人名)과 지명(地名)으로 나뉘며 일반 용어에는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동식물 이름 등 삼라만상의 어느 것이건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용어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거듭하여 강조하거니와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분이요, 그것이 외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한국어 국적을 획득한 낱말들이다. 따라서 외래어표기법은 당연히 모든 외국어를 대상으로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2. 외래어표기법의 역사

우리나라의 외래어표기법은 앞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1986년 1월 7일 자 문교부 고시 제 85-11호로 공포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외래어표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개화기에 서유럽 여러 나라의 낱말을 표기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중국에서 음차(音借) 표기의 방법으로 적은 한자(漢字) 외래어를 우리 음으로 읽는 아라사(阿羅斯), 미리건(彌利堅), 화성돈(華盛頓)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외래어표기 사례의 처음 모습이었다. 그 후 일정한 규칙 없이 글 쓰는 이들이나 신문에서 얼마 동안 자의적으로 표기해 오다가, 이러한 형편을 안타깝게 생각한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확정 지은 1933년에 그 통일안의 제60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 것이 우리나라 외래어표기법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다.

第 60項 外來語를 表記할 積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 (1)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않는다.
- (2) 表音主義를 取한다.

그 후 조선어학회는 ‘들온말 적는 법’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추진하여 1940년 6월에 2장 3절 17항으로 구성된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그 통일안의 제1장 총칙은 다음과 같다.

- 一. 外來語를 한글로 表記함에는 原語의 (綴字)나 語法的 形態의 어떠한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表音主義로 하되, 現在 使用하는 한글의 字母와 字形만으로 써 적는다.
- 二. 表音은 原語의 發音을 正確히 表示한 萬國音聲記號를 標準으로 하여, 아래의 對照表에 依하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위의 규정은 이미 7년 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60항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재확인하면서 만국음성부호와 한글과의 일정한 대응 표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은 1948년에 이르러 문교부가 새로이 ‘들온말 적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역사적 임무를 끝마쳤다. 그러나 이 ‘들온말 적는 법’에는 현행 한글 자모 이외에 ‘△, ▢, ◇’ 같은 자모를 추가하고 파열음의 유성음을 된소리로 적는 등, 지금까지의 외래어표기 전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문교부에서는 1956년부터 국어심의 위원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또다시 새로운 표기법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공표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다.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어표기에는 한글 정자법(正字法)에 따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3. 받침은 파열음에서는 ㅂ, ㅅ, ㅈ 비음에서는 ㅁ, ㄴ, ㅇ 유음에서는 ㄹ만을 쓴다.
4.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
5.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문교부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에 앞서 통용된 ‘들온말 적는 법’이 외래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의 한글 자모를 부활시키고 된소리 표기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 기본 원칙 첫째 항에 밝힌 한글 정자법(正字法)이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공표한 후에 문교부는 그 활용을 위하여 외래어표기 세칙을 더 마련하고 1959년에서 1972년까지 교과서 편찬을 위한 편수 자료를 제6집까지 발간하기에 이른다. 이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분야가 세계역사, 세계지리 등을 다루는

교과서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도 여전히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표기법은 장음(長音) 표기를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장모음(長母音)은 동일 모음을 거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 적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중모음 표기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장음 표기가 쓰이는 폐단을 낳았다. 그리고 원칙과 세칙이 혼란스럽게 쪼개져서 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음하여 사용하기에 부자연스런 점이 큰 문제였다. 또 더 큰 결점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라는 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기법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영어와 미국 영어 이외의 언어는 표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조금 폭을 넓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로마자를 쓰는 나라의 언어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 러시아, 아랍 등 로마자를 쓰지 않는 나라의 언어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 표기법은 조만간 다시 손을 보아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현행의 ‘외래어 표기법’이 나왔다.

3. 현행 외래어표기법 개관

이 ‘외래어표기법’이 1986년에 탄생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온 세계 여러 나라와의 급격한 연계 현상(globalization)이 크게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는 아시안 게임, 198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에 전 세계 각 나라의 선수 이름과 나라 이름, 도시 이름 등 엄청난 양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것이 외래어표기법의 시급한 준비를 재촉하였다.

이 외래어표기법은 다음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표기의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표 19개)
제3장 표기 세칙(21개 언어)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이 법은 제1장과 제4장은 고정되어 있고 제2장과 제3장은 계속하여 보완되는 열린 규정이다. 제2장의 표기 일람표는 표기해야 할 대상 언어의 문자와 한글과의 대응 대조표이고 제3장은 개별 대상 언어들의 표기 세칙이다.

1986년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

1991년에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등 동구권 5개 언어

1995년에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등 북구권 3개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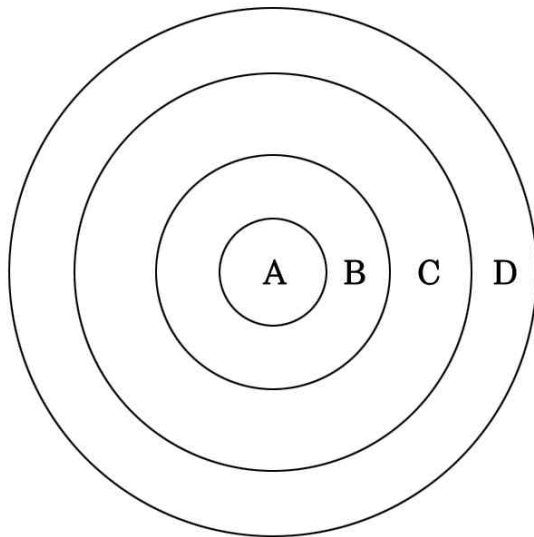
2004년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동남아 지역 3개 언어

2005년에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

그래서 현재는 모두 21개 언어의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제1장 표기의 원칙은 이 외래어표기법의 대강령으로 절대 불변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 세목은 일견하여 1958년에 문교부에서 공표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다소 윤문하여 손질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표기법의 기본 정신 및 운용 원리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이 법이 바로 앞서 시행되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상당 부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기본적인 한계성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의 세부 내용에서는 개별 언어 문자와 한글과의 대조표와 표기 세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큰 일개를 제시한 표기 원칙은 그런대로 원만한 것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5개 항의 규정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 태도에는 “외래어: 한국어”라는 단순 양분법의 정신이 짙게 깔려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글이 표기해야 하는 외국어를 하나로 뭉뚱그려 ‘외래어’라는 낱말로 대표하게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외래어’라는 낱말은 그 모태(母胎)가 된 앞선 표기법(로마자 한글화 표기법)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외래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의식하고 사용된 용어의 ‘ 옮겨 쓰기’같은 인상을 짙게 풍긴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인상을 지워버리고 ‘외래어’라는 낱말을 열린 개념의 ‘외래어’로 생각하고 사용하여야 하겠다. 언어 문자는 본질적으로 문화를 담는 그릇이며 문화는 언어 문자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 문자와 모든 외래어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4개의 동심원으로 나타내 보기로 하자.



A는 한국어 문화권이다.(여기에 당연히 북한이 포함되지만, 함께 논의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B는 공통 문자 문화권이다. 한자(漢字) 문화권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다. 지난 이천 년간 중국, 한국, 일본은 공통 문자 곧 한자에 의해 상당 부분 공통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다. 현재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의 네 나라가 포함된다. C는 비한자(非漢字) 및 서유럽 문화권 전반이다.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연계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언어를 포함한다. D는 아직까지 한국의 언어생활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원방(遠方) 문화권이다. 무연고(無緣故) 문화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외래어로 등재된 적이 없는 나라나 민족의 언어를 가상하여 설정한 문화권이다. 아마도 이 D는 C의 어떤 언어(대부분 영어)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구도를 앞에 놓고 표기의 원칙 다섯 개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4. 제1장의 내용

4.1.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이 항목은 특별히 시비할 것이 없다. 포괄적이고 원만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을 지적하자면 현용 24자모라는 것은 한글의 기본 자모 24개 즉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서 현재 국어 생활에 쓰이는 모든 한글 글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불만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외래어는 국어 속에 포함되는 들어온 말이므로 어떤 외국어건 이 외래어표기법에 의해 한글로 고쳐 적히는 순간, 그것은 국어 자산에 포함된다.

만일에 어느 외국어의 원음을 좀 더 충실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현용 24자모 이외의 글자, 예컨대 15세기에 통용되었던, ‘Δ, ʙ’ 같은 것을 개

발하여 쓰자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표기는 이미 현대 한국어임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외국어표기는 될 수 있어도 외래어표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1948년에 문교부가 제정 고시하였던 ‘들온말 적는법’에서 이러한 과오(過誤)를 저지른 선례가 있다.

우리는 모든 외국어를 그 언어의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의 국제음성부호화 작업이지 외래어표기법과는 별도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기법은 외국어 학습용으로는 활용될 수 있어도 국어 문자 생활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래어는 또다시 강조하거나 자연스런 국어 발음 생활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국어에 동화되고 순화된 국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4.2.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이 항목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해당 외국어를 외래어로 포용하는 처음 단계가 그 언어의 음운체계 곧 발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접할 때는 그 언어의 문자와 발음을 동시에 접하며, 또 발음은 문자를 통하여 추론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규정은 발음 속에 숨어 있는 음운체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그 언어를 표기한 문자를 문제 삼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의 원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원음주의 표기법임을 이 항목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음운(문자가 아님)이 우리 한국인의 귀에 다른 음으로 들린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으니 이 규정이

얼마나 해당 외국어의 원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 항목에 시비를 건다면,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한자 문화권 내에 속한 일본어와 중국어는 대체로 한자로 적혔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전통적 관용 표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4.3.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 항목도 외래어표기법이 국어 음운 규칙에 충실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단음절(單音節)로 된 낱말이거나, 어떤 낱말의 끝소리 곧 음절말(音節末)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위의 7개 소리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에는 “꽃, 끝, 복녘, 낱알, 젓, 뉘, 좋다” 등 한글맞춤법상으로는 14개의 자음 자모가 다 쓰이고 겹받침, 쌍받침까지 쓰이지만 그것은 이른바 어간(語幹)의 기본형을 고정시킴으로써 표기상의 규칙성을 확보하려는 맞춤법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발음 위주의 외래어 표기법과는 관련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ㅅ’으로 외래어 원어의 [d], [t] 등을 표기한다는 불편함이다. 즉 영어의 ‘good-bye’와 ‘Hair-cut’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굿바이’, ‘헤어컷’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헤어컷’이 우리말 속에서 ‘헤어커시(헤어컷+이), 헤어커슬(헤어컷+을)’로 발음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표기법이다.

4.4.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항목에는 많은 논쟁거리를 감추고 있다. 서양 외국어의 상당수가 파열음에 유성(有聲), 무성(無聲)의 대립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는 유성음이 없고 무성음이 평음(平音: 예사소리), 격음(激音: 거센소리), 경

음(硬音: 된소리)의 세 갈래 대립을 갖고 있다. 영어로 예를 들자면 ‘[g], [k], [b], [p], [d], [t]’는 한국어의 ‘ㄱ, ㅋ, ㆁ’, ‘ㅂ, ㅍ, ㅃ’, ‘ㄷ, ㅌ, ㄸ’와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자음 음운 ‘g, k’를 ‘ㄱ, ㅋ, ㆁ’ 셋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여 표기해야 되는데 이때에 만일 된소리를 선택하면 ‘ㄱ, ㅋ’의 구별이 없어지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서양의 각 언어의 파열음이 어떤 것은 거센소리에 가깝고(영어, 독일어) 어떤 것은 된소리에 가까워서(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된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쓰일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서는 비록 외래어 원음과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평순한 표기 체계를 지향하려 하였다. 이 정도의 제약은 아마도 불가피한 조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간 보완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버스, 달러, 센터” 등의 현실음이 경음으로 통용됨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평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4.5.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 항목이야말로 전통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하는 언어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에서 벗어나는 표기법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커다란 열개 규칙이어서 특별히 시비를 걸 수는 없겠다. 가령 나라 이름을 예로 생각해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은 19세기 이래 전통적으로 써오던 한자어 표기의 외래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오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불란서는 프랑스, 이태리는 이탈리아, 스페인(영어식 발음)은 에스파냐, 화란은 네덜란드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르러 존중해야 하는 관용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는 있다. 이 의문을 확대하면 외래어표기법이 애초에 알파벳과 한글의 대응만을 의식하고 만들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4장에서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을 마련하면서 특별히 제2절은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규정 4개 항목을 따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5. 제4장 제1절의 내용

외래어 인명, 지명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한국어의 어휘 자산을 늘리고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명멸했던 사람의 이름과 땅의 이름, 그리고 현대사를 주름잡는 사람의 이름과 땅의 이름은 지구촌 한 마을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때에 필요 불가결의 언어재요 언어 자산이다. 가령 노벨 수상자의 이름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동티모르’라는 땅 이름과 나라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식민지 팽창이 극성을 부리던 제국주의 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의 한 구석에서 언어와 인종은 인도네시아와 같으면서 정치, 경제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룬 현대사의 아픔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증거의 낱말이다.

제4장의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은 고유명사 표기의 대원칙을 개괄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4개의 동심원을 생각하고 본다면 이 표기법(표기 원칙)이 C언어 문화권과 한국어라는 A언어와의 관계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제2항과 제3항이 그러하다.

제2항은,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앙카라(Ankara)와 간디(Gandhi)를 예시하고 있다. 앙카라는 터키의 지명이고 간디는 인도의 힌

디어 기원의 인명이다. 그리고 그 표기의 근거는 영어 알파벳이다.

제3항은 “원지음이 아닌 제3국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고 하고 네덜란드 지명 헤이그(Hague)와 고대 로마 인명 시저(Caesar)를 들고 있다. 이것 역시 영어 알파벳을 관용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제4항은 일찍이 한자어로 번역되어 통용되는 태평양(太平洋 Pacific Ocean)과 흑해(黑海 Black Sea)를 예시하였다. 이것은 한자어라는 점에서 제2절과 연계되지만 그 번역의 토대가 역시 C언어권에 속한 영어 알파벳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모든 외래어는 일단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 특히 영어를 ‘핵심으로’ 삼아 표기법을 마련하였음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B언어권, 다시 말하여 ‘한자’라는 공통 문자를 사용해온 중국과 일본의 외래어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지난 이천 년간 한자 문화권 안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광범위한 한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한자는 언어가 다른 세 나라의 공통 언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였다. 그리고 그 문자는 세 나라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한 자기 나라 발음에 따라 읽는 전통을 확립하였다. 그러므로 표기 문자로서는 공통의 문자를 쓰면서 그 발음은 세 나라가 독자적인 한자음 체계를 확립하여 사용하였다.

6. 제4장 제2절의 문제점

6.1.

그런데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규정은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먼저 중국 인명, 지명에 관한 두 항목을 읽어 보자.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위의 두 항목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는 착잡한 심경에 이른다.

어떠한 규정이건 예외와 변칙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요, 상례이지만 그 예외와 변칙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거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그야말로 매우 적은 범위만을 예외 또는 변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국의 인명·지명에 오면 과거와 현대라는 매우 막연한 시대 구분을 내세워 관용 표기와 중국어 원음 표기를 공존시키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삼중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는 조항부터 시비를 걸어야겠다. 이것은 병기(併記)라고 못 박음으로써 한자 표기 하나만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글전용을 대전제로 하는 어문 정책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므로 한자(漢字) 사용을 기휘(忌諱)하는 이러한 규정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자가 우리나라 문자의 한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단순히 병기를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필요한 경우, 한자로 적을 수 있다.”로 이 규정에 여유를 두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는 관용 표기, 현대는 원음 표기라는 완벽한 이중 구조가 더욱 큰 걸림돌이다. 또 과거와 현대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흔히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을 분기점으로 삼아 그 이전을 과거로, 그 이후를 현대로 규정한다는 모 기관의 유권해석(有權解釋)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이야 말로 웃기는 구분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은 원음주의 표기 일변도로 만들고 싶은 의욕이 이천 년의 오랜 역사적 전통 곧 관행 표기와 맞부딪치면서 그 절충안을 찾아 엉겨주춤한 상태로 관용 표기와 원음 표기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외래어표기법의 대원칙을 원음 표기로 삼고 모든 외래어는 원음에 가까운 표기로 귀착하여야 하는데 한자 문화권의 중국어와 일본어에 와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없을 만큼 관용 표기의 전통이 강하니까 과거와 현대라는 어정쩡한 시대 구분을 두어 관용 표기를 인정하면서 원음 표기의 대원칙으로 방향을 고정시키려 하는 의도가 이 규정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 전환의 의도 즉 모든 외래어를 원음 표기로 나아가려는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은 외래어가 본질적으로 국어의 영역 안에 들어온 국어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어의 음운체계와 발음 관습에 따른 편한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외래어표기의 전제 조건 내지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재고(再考)를 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오천 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서 중국의 인명·지명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고 사용해온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같은 언어 문화권, 같은 문자 문화권 안에 사는 서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몇 예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영어권에서는 프랑스의 도시 이름 ‘빠리’를 ‘패리스’로 부르고 이탈리아의 도시 이름 ‘베네치아’를 ‘베니스’로 ‘나폴리’를 ‘네이폴스’로 부른다. 프랑스어권에서는 영국의 도시 이름 ‘런던’을 ‘룽드르’로 ‘도이치란트’를 ‘알레망’으로 바꾸어 부른다. ‘룽드르’는 프랑스어에 순화되어 마치 프랑스의 도시 이름 같다. 또 영어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어거스틴’으로 ‘장·가뵐’을 ‘존·개빈’으로 부른다. 이와 같이 서유럽 언어가 다른 나라 이름을 외래어로 받아들일 때는 자기 나라 언어의 음운체계에 동화된 낱말로 만들어 사용하는 오랜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이것이 고유명사 외래어 사용의 보편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손문(孫文), 장개석(蔣介石), 모택동(毛澤東), 북경(北京), 상해(上海), 연변(延邊)을 ‘쑨원’, ‘쟡제스’, ‘마오쩌둥’, ‘베이징’, ‘상하이’, ‘엔뎨’으로 바꾸어 쓰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째서 이러한 무리수의 규정을 마련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설파한 글이 있었다. 참고삼아 인용해 본다.

“요컨대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원지음주의는(중략) 1948년 10월 한글 전용을 선포한 배경 속에서 분석해 보면(중략) 한글 전용을 쟁취한 묘안이었다고 하겠다. 가령 ‘북경’이라고 부르면 ‘北京’이라고 쓰게 되나, ‘베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北京’으로 쓰지 않는다는 단순 논리에 만족했으니까 뒤따르는 여타의 문제를 널리 고려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金敏洙, 『새국어생활』 2004년 여름호.)

6.2.

중국의 인명·지명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일본의 인명·지명 문제로 넘어가 보자.(제4장 제2절)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이 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한자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본 문자 가나(ガナ)만을 쓰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나와 한글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표기법을 규정한 일본어 표기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가나와 한자를 참으로 사이좋게 공존

시키는 언어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서구 문명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던 19세기 이래 일본도 한때는 한자를 버리고 가나만으로, 더 나아가 가나도 버리고 알파벳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데에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철저하고 정성스러운 일본 사람들은 가나와 한자를 다정스럽게 함께 쓰는 어문 정책을 확립하기에 이른다. 특히 제2차 대전 종료 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던 1940년대 후반에 한자 폐지를 종용한 미국의 음성적인 압력을 일본 사람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은 가나, 한자 혼용 체계를 의연하게 밀고 나왔다. 돌이켜 생각하면 일본이 한자를 버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자의 다양한 음독(音讀), 훈독(訓讀) 체계가 고유 일본어와 오랜 세월 맞물려 있어서 일본은 한자를 버리면 그것 자체가 일본어를 버리는 결과가 되는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일본어를 우리가 외래어로 표기하고자 할 때 가나문자만을 대상으로 한 듯한 이 제3항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슬프게도 일제 강점기, 1939년 조선총독부가 경성방송국에 내린 이른바 “기묘망발령(己卯妄發令)”으로까지 소급된다. 이 명령은 일본의 인명, 지명 등 일본어는 모두 일본 한자음으로 말하여 방송하라는 것이었다. 즉, “東京”을 “동경”으로 발음하지 말고 “도오쿄”로 발음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 조선어 아나운서와 방송 담당 조선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거부 운동을 벌였으나 조만간 일본어 상용(日本語常用)이 강제되면서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방송에서는 “동경”, “풍신수길”이 사라지고 “도오쿄오”, “도오도미히데요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그 후에 방송이나 일반 언론매체에서 중국의 인명·지명과 함께 일본의 인명·지명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고 말해지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현재 외래어표기법이 점차로 세력을 얻어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인명·지명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에서는 이승만(李承晩)을 “리쇼방”, 전두환(全斗煥)을 “젠또깡”, 광주(光州)를 “고요슈”로 부른다. 재일교포 최창화(崔昌華) 목사가 자기 이름을 한국식 발음으로 불러 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물론 외국어 표기의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潘基文(バンキムン)”이라고 신문 기사에 쓰는 수가 있으나 이것은 알파벳 문화권인 유엔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지 한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특수 경우에 속한다.)

또 중국에서는 김대중(金大中)을 “쩨따중”으로 노무현(盧武鉉)을 “루우쎌”으로 대전(大田)을 “다덴”으로 현대자동차는 “쎌파이치처(現代汽車)”로 발음한다. 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징귀션셔”로 발음한다.

요컨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자기 나라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포기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가 죽기 살기로(?) 한자 쓰기를 포기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토록 한자 문화권 안에서 자주적 표기를 스스로 외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오랜 관습을 완벽하게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한 줄기의 문화 의식이 없지는 않다. 그것이 제2절의 마지막 항인 제4항이다. 제4항은 “중국 및 일본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東京/ 도쿄/ 동경,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의 삼중 표기의 길을 터놓기는 했으나 이것은 궁여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인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등박문(伊藤博文), 복택유길(福澤諭吉), 등소평(鄧小平), 호금도(胡錦濤)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7. 결론

이상으로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들을 개괄하였다. 크게 문제되는 것을 비평을 겸해 자세히 언급했고 무난한 조항은 해설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제 이 표기법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말 A가 알파벳 문화권 C언어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표기법을 원음주의 중심으로 정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 속한 B언어를 대상으로 한 외래어표기법은 개정의 여지를 갖고 있음을 누누이 지적하였다. 공통 문자인 한자를 사용해 온 한중일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어를 자기 나라 한자음으로 읽는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의 관행을 따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부득이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크게 손을 볼 필요도 없다. 제4장 제2절만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예상하여 고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항목이면 충분할 것이다.(중국과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언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없는 인명이나 지명은 해당 언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하고 반드시 한자를 병기한다.)

어떻게 이처럼 간단한 규정이 가능한가? 그것은 한자 문화권이 지니는 특성이요, 그것이야말로 동양 삼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21세기에도 과거 수천 년간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 일본과 나란히 동양 문화의 우수성을 공유하며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한자를 공유하고 공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일 것이다.